

데이터분석 기반 자격증 학습 플랫폼

FINANCIAL LAB

투자자산운용사

LAB NOTE

합격에 필요한 공부만 한다.

스마트한 자격증 공부

financiallab.co.kr

목차

1과목	1
세제 관련 법규/세무 전략[7문항]	2
금융상품[8문항]	22
부동산 관련 상품[5문항]	42
2과목	62
대안투자 운용/투자전략[5문항]	63
해외투자의 기초와 국제분산투자[5문항]	85
투자분석기법1: 기본적 분석[12문항]	100
투자분석기법2: 기술적 분석	121
투자분석기법3: 산업 분석	146
리스크 관리[8문항]	165
3과목	185
직무윤리[5문항]	186
자본시장 관련 법규[11문항]	207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3문항]	233
주식 투자운용/투자전략[6문항]	251
채권 투자운용/투자전략[6문항]	276
파생상품 투자운용/투자전략[4문항]	300
투자운용결과 분석[4문항]	323
거시경제 분석[4문항]	345
분산투자기법[5문항]	366

본 자료는 파이낸셜랩이 제작한 자료입니다.
무단 복제·배포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2026 Financial Lab. All rights reserved.

S U B J E C T

1과목

세제 관련 법규/세무 전략[7문항]

학습 목표

- 조세의 종류를 구분하고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과세방식(종합, 분류, 분리)을 비교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이해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과 과세 방법을 설명하고,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원리를 이해한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과 계산 구조를 파악하고,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증권거래세 기본 개념과 과세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 금융소득, 상속, 증여와 관련한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의 핵심 개념

국세기본법은 모든 국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조세의 분류

세금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시험에서 각 분류 기준과 해당 세금을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분류 기준	종류 1	종류 2
과세주체	국세: 국가가 부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취득세, 재산세 등)
전가성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소득세, 법인세 등)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사용목적	보통세: 일반 경비 충당 (대부분의 세금)	목적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과세표준	증가세: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부분의 세금)	증량세: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 (인지세 일부 등)

-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1. 성립: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단계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 **확정**: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

- **신고주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 **부과주의**: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확정 (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세액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3. **소멸**: 확정된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주요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 취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 EXAM POINT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개념과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
-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구분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	사기·부정행위	상속·증여세 (무신고, 사기)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15년
소멸시효	5년 (5억 미만)	10년 (5억 이상)	-	-

불복절차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 KEY POINT

-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임의절차)이지만,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중 하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이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할 수 없다.
-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납세의무의 확장: 제2차 납세의무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해산법인의 청산인 등**: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법인의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과점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며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자신의 지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사업양수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사업 관련 국세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기도 한다.

- **법인 합병:** 피합병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한다.
- **상속:**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는 상속인이 승계하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고·청구 제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세금을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가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했으나 세금을 **많이 신고(과다신고)**한 경우,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결손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한(무신고)** 경우, 기한이 지난 후에 하는 신고이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

기간과 기한

세법에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지만, 기한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한다. 세법에 규정된 신고, 신청, 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첫 번째 정상 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또한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 신고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서류의 송달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교부송달:** 세무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해당 서류를 받을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 **우편송달:**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자송달:**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메일 등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 **공시송달:** 주소 불분명, 국외 거주, 수취인 부재 등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할 때, 서류의 주요 내용을 관보나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TIP: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점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반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국세우선권과 그 예외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징수할 권리(국세우선권)를 가진다. 하지만 공익적 목적이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

- 강제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소요된 비용 (공익비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보증금

-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대상인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국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연습문제

1. 다음 중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법인세
- ② 소득세
- ③ 재산세
- ④ 부가가치세

정답 및 해설

정답: 3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이 '부과주의'에 해당하는 세목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소득세, 법인세
- ② 상속세, 증여세
- ③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 ④ 법인세, 부가가치세

정답 및 해설

정답: 2

대부분의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증권거래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주의(신고납세제도)를 따른다. 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주의(정부 부과제도)가 적용된다.

3.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다.
- ②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가 추가로 하는 신고이다.
- ④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전액 면제된다.

✔ 정답 및 해설

정답: 2

경정청구는 과다신고(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초과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제도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절차이고(①),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자가 하는 신고이다(③).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일정 비율 감면될 뿐 전액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④).

5. 국세우선권 원칙에 따라, 국세가 다음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경우는?

- 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② 강제집행 또는 파산절차 진행에 소요된 비용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 ④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정답 및 해설

정답: 4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는 국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강제집행 비용이나 우선변제 임차보증금 등은 국세보다 항상 우선한다.

2. 소득세법의 이해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의 특징

- **종합과세 원칙:** 1년간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예외: 분류과세, 분리과세)
- **주소지 과세제도:** 소득발생지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유사한 소득도 과세한다.
- **개인단위주의:** 개인별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다.
- **신고납세제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한다.

- **누진과세 및 원천별 차등과세:**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소득의 원천에 따라 과세방식을 달리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정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가 아닌 개인
납세의무 범위	무제한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	제한 납세의무: 국내원천소득에 한정

TIP

거주자 판단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이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방식: 종합, 분류, 분리과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시험의 단골 출제 주제이다.

구분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개념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6%~45%)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목적	조세부담의 공정성 실현	장기 발생 소득의 세부담 완화 (결집효과 방지)	납세 편의 및 소액 소득 과세

EXAM POINT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를 혼동하지 마세요. '분류'는 완전히 별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퇴직, 양도) 따로 계산하는 것이고, '분리'는 원천징수로 끝내고 종합소득 합산에서 제외(분리)시키는 것이다.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이 기간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으며, 사업의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출국(국외이주)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원천징수의 유형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만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이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예: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 **예납적 원천징수:**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납세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이때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예: 근로소득 연말정산 전 원천징수,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방법은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특정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 한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국내원천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통상 20%)를 통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거주자와 동일하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한다.

연습문제

1. 소득세의 특징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소지 과세제도
- ② 열거주의 과세
- ③ 부부합산주의 과세
- ④ 신고납세주의

정답 및 해설

정답: 3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원천징수의 종류 중, 원천징수 후 추가적인 확정신고 및 정산 절차가 필요한 '예납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 ②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 ③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
- ④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정답 및 해설

정답: 3

예납적 원천징수는 과세기간 중에 소득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고, 차후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완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비거주자의 소득 등이 해당된다.

3. 소득세법상 과세방식(종합·분류·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 ②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 ③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모두 여러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개념이다.
- ④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다.

✔ 정답 및 해설

정답: 2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완납적 원천징수). 퇴직소득·양도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별도로 계산하는 분류과세 대상이고(①), 분류과세는 별도 카테고리대로 계산하는 것이어서 분리과세와 다르며(③),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분류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된다(④).